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하 ‘무급가족종사자’라 함)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법 개정에 따라 무급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중 시행령 위임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소음성 난청 검사 기준에 발전된 의료기술을 반영하여 검사 기준 개선을 통한 처리 신속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요건 구체화(안 제122조제2항 신설)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되 가족종사자 가입 요건 중 법에서 정한 요건 외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함.

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 조문정비(안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무급가족종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조문 추가에 따라 시행령 위임 규정 조항(법 제124조제2항 → 제124조제4항)을 변경함.

다.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 적용(안 제124조)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된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동일하게 체납기간 중 보험급여 지급제한을 적용함.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기타 사유 명시(안 제125조제2항 신설)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가능하도록 이를 관련 규정에 명시함.

마.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3 제7호 차목)

순음청력검사 간격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재검사 실시요건을 축소(現 5가지 → 改 3가지)하며, 재검사 생략요건을 신설하여 실제 현장에 맞도록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3. 23.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1항 중 “전단”을 삭제한다.

제1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12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23조 중 “사업주”를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조 중 “제124조제2항”을 “제12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 “사업주”로”를 “사업주 등”으로”로 한다.

제124조 중 “사업주”를 “사업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사업주가”를 “사업주 등이”로 하며, “제124조제4항”을 “제124조제6항”으로 한다.

제12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3 제7호 차목 2) 나) 중 “3~7일 간”을 “48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같은 목 2) 나) 후단에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를 신설하며, 같은 호 같은 목 2) 나) 중 “(2)”와 “(3)”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8일부터, 제12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2조(중·소기업 <u>사업주</u> 의 범 위) ① 법 제124조 제1항 <u>전단</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 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u><신 설></u>	제122조(중·소기업 <u>사업주</u> 등의 범 위) ① ----- (삭제) ----- ----- ----- ----- ----- -----.
② (생략)	②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 1항의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u>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u> <u>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u>
③ (생략)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제123조(중·소기업 <u>사업주</u> 의 업무 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12 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u>사업</u> <u>주</u> 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소기업 <u>사업</u>	제123조(중·소기업 <u>사업주</u> 등의 업무 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4항----- <u>사업</u> <u>주</u> 등----- ----- ----- -----.
	----- <u>사업</u>

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제124조(중·소기업 <u>사업주</u>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u>사업주가</u>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생략) <u><신 설></u>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	<u>주 등”으로</u>----- ----- -----. 제124조(중·소기업 <u>사업주</u> 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6항 ----- <u>사업주 등이</u> ----- ----- ----- -----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5조제4항제3호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란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
---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illegible]

(1) (생 략) (2) <u>상승법 · 하강법 ·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u> (3) <u>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u> (4) 및 (5) (생 략)	<u>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또는 임피던스 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 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 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u> (1) (현행과 같음) (2) <u><삭 제></u> (3) <u><삭 제></u> (4) 및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705